

인천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6155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나6155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2가소1918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4. 6. 14.

판결 선고 2024. 8. 1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2가소19187 판결

주문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15.부터 2024. 8. 1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경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피고 회사의 전화권유를 받고 피고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체결 당시 교부된 보증서에 따르면 "상품 가입 후 6개월 이내 피고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는 경우 회원비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위 합산 수익률은 매수추천 종목 중 매도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환불조항'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회원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 원고의 계좌 대비 수익률이 손실 상태에 이른다는 이유로 피고 측에 회원비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피고의 매수추천 종목 중 매도추천 종목 기준 시 수익률이 200%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유사투자자문회사임에도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 것과 같이 행세하고,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법을 활용한다고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 실현내역만을 제시하고, '6개월 내 200% 수익률이 달성되지 않으면 전액 반환해준다'고 약정하는 등 피고의 기만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납입한 회원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유사투자자문회사임에도 '1:1 맞춤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문회사인 것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을 제2, 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여 증권정보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손실가능성을 은닉하고 수익이 발생한 종목만을 홍보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에는 손실이 발생한 종목들의 내역도 공개가 되어있는바, 피고가 고의로 수익이 발생한 종목 및 이에 대한 공증내역만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끝으로 이 사건 환불조항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54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환불조항을 계약조건으로 내세워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2024. 6. 7.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회원비로 지급받은 3,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서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하거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과거 수익률을 인용하면서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사건 환불약정은 일정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비를 반환하여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회원비를 초과하는 손실을 본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회원비와 동일한 손실을 본 경우 원금을 보장해주고, 200%에 못 미치는 수익을 낸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55조에 정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또는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¹⁾ 다) 이 사건 계약 보증서 제2항에 의하면 '합산수익률'은 회사가 본 상품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매수 추천 종목 중 매도 추천 정보 제공이 완료된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합산수익률'의 개념과 계산방식은 전체 투자금에서 수익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수익률의 개념과 큰 차이가 있는바, 원고와 같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합산수익률'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 듣지 못한다면, 이를 통상의 수익률 개념으로 오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 주식정보제공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가 추천하는 종목의 투자에서 손실을 입더라도 이 사건 환불약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반환됨으로써 손실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위 계약의 체결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환불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합산수익률'의 개념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그런데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수익률 개념에 대한 오해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합산수익률'의 개념 및 계산방식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사건 계약 보증서 제2항 문언에 의하더라도 '합산수익률' 개념이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거나 강조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부당이득반환 범위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이 있는바(민법 제748조 제2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악의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원비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회원비를 받은 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4. 8. 1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승환

판사김한울

판사이지현

1) 참고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24. 8. 14.부터 시행된다(2024. 2.

13. 법률 제20305호로 개정된 것).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2)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6198 판결 참조).